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고 등 교 육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학교 내 성희롱·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인권센터 설치 의무화('21.3.24. 시행)됨에 따라, 그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하고,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함(안 제9조의3제1호, 2호)
- 나. 인권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직원,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고,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함(안 제9조의3제3호)
- 다. 인권센터에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등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하며, 신고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전용공간을 갖추고 그 공간 내에 CCTV, 안전벨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함(안 제9조의3제4호, 5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) 법 제19조의3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·운영할 것
2.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일 것
3. 인권센터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,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것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
4. 인권센터에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 밖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할 것
5.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. 이 경우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3(인권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) 법 제19조의3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 <u>1. 인권센터는 학교의 별도 독립적인 기구로서 설치·운영할 것</u> <u>2.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일 것</u> <u>3. 인권센터 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, 학생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것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.</u> <u>4. 인권센터에 성희롱·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와 그</u>

	<u>밖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 업무를 하는 자를 각각 지정할 것</u> <u>5.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출 것. 이 경우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,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255